사단법인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Korean Bioplastics Association)

정관

2022. 5.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 영문으로는 “Korean Bioplastics Association” (약칭 KBPA)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① 본회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환경보존과 지속가능사회 구축에 기여하여 건전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물유래자원 등 재생가능한 물질(biomass)을 포함하는 원료를 이용하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biomass-based plastics)과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사회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소재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정한 조건에서 수분,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다양한 원료 (바이오매스 또는 화석연료 기반 화합물)로부터 생산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플라스틱의 연구개발 및 용도 확대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
2. 바이오플라스틱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활동
3.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4. 바이오플라스틱의 응용확대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기여
5.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동향 및 규격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6. 바이오플라스틱의 표준규격 및 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
7. 플라스틱의 LCA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에 기여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마크회원으로 한다.
-정 회 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마크회원: 본회가 승인, 운영하는 바이오플라스틱 마크를 인증받은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 및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단체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총회의 재적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입회비, 회비 및 특별회비) ①본회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받는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회비, 회비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필요시 특별회비를 기부 받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입회비, 회비, 그 밖의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회장 포함) 이내 (상임이사 1인 이상 포함)
3.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임원은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임원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및 상임임원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제39조(설치와 구성)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본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1. 교육연구 및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2. 실무운영 및 후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3.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한 후 해산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법률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첨] 입회비 및 회비

- 입회비 및 회비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입회비 : 50만원
- 연회비 : 매출액 50억 이하, 50만원
  매출액 2000억 미만, 100만원

매출액 1조 미만, 150만원
매출액 1조 이상, 300만원
- 적용시기 :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는 제16조 및 “별지2”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별지 1

재산목록						
총계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2.보통재산	품 목		대수	종류	금액	비고